

#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등에 관한 법률안

## (김현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298
----------	-------

발의연월일 : 2025. 8. 21.

발의자 : 김현정 · 강준현 · 김남근  
김문수 · 민병덕 · 박정현  
박지원 · 복기왕 · 양부남  
이상식 · 조인철 · 차지호  
의원(12인)

### 제안이유

최근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활용 범위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이를 통한 결제, 송금, 투자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음. 특히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발행인의 준비금 보관, 상환 의무, 정보공시, 거래소 상장 · 폐지 기준 등 세부 규율을 마련하여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는 법적체계를 구축하였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외 발행 자산이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유통되는 상황에서도 이용자 보호와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한 명확한 규율 체계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발행인의 등록 요건과 준비금 보관 · 관리 의무, 발행 · 상환 절

차와 공시 의무를 명확히 하고, 국내 거래지원 시 준수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며, 외국발행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제도권 안에서 안정적이고 건전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시장을 조성하려는 것임. 아울러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의 역할을 규정하여 금융시스템 전반의 신뢰와 안정성을 제고 하려 함.

## 주요내용

- 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및 분산원장의 정의, 발행업의 범위, 적용 대상 및 제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 제3조).
- 나.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인가 요건, 신청 절차 및 효력 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인가 취소 및 유사 명칭 사용 금지 등 인가 제도의 근간을 마련함(안 제4조부터 제11조 까지).
- 다.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 전 발행신고서 작성 및 제출 의무, 신고의 효력발생, 정정신고, 설명서 공시 등 발행 절차를 규정하고, 허위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해 명시함(안 제13조부터 제21조까지).
- 라.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기술적 요건으로 분산원장의 관리, 발행 증거 통화의 액면 표시, 발행사실 통보 등 발행 방식에 대해 규정 함(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 마. 발행인의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상환 의무를 명시하고, 총 발행

금액 이상의 준비자산을 확보하여 고유재산과 분리해 별도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함(안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바. 준비자산 관련 공시 및 보고 의무, 발행 현황 공시, 거래 내역 확인, 안전성 확보 등 발행업자의 정보 공개 및 안전성 유지 의무를 규정함(안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사.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감독 및 검사 권한을 명시하고, 법 위반 시 시정명령, 업무 정지 등 행정 조치 및 가상자산시장 운영자에 대한 거래지원 관련 조치 권한을 부여함(안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아. 발행인의 의무 위반, 불공정거래행위 등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양벌 규정,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마련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함(안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등에 관한 법률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이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상자산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분산원장을 기반으로 발행 및 이전될 것

나.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단일한 종류의 법정 통화의 가치에 준거하여 해당 통화로 액면을 표시하여 발행될 것

다. 발행인에 의하여 나호의 액면에 해당하는 통화와의 상환이 보장될 것

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2. “분산원장”이란 가상자산에 관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다수 참여자에 의해 공동으로 기록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하여 무단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전산화된 장부 및 그 관리 체계를 말한다.
3. “발행”이란 특정 표시통화의 가치에 연동되는 가치안정형 디지털 자산을 공개형 분산원장을 통해 최초로 생성하여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 분산원장의 변경 등을 목적으로 하여 특정 수량이 소각되고 다시 생성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으로 보지 아니한다.
4. “발행인”이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을 발행한 자를 말한다.
5. “보유”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을 이전할 수 있는 통제권을 비롯하여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에 관한 권리의 모든 통제권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6. “이용자”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을 보유하는 자를 말한다.
7. “발행 준거 통화”란 제1호나목의 통화를 말한다.
8. “준비자산”이란 발행인이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이용자의 통화 와의 상환 청구에 응하기 위하여 보유하여야 하는 자산을 말한다.
9.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이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을 발행하고 이전 등의 거래를 관리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0.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자”란 이 법에 규정에 따라 대한

민국 내에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허가를 받아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에 따라 발행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이 법에 따른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에 관하여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장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제4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인가) ①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 나. 외국 법령에 따라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외국 법인으로서 국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한 자
2. 50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이용자의 권리 보호가 가능하고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5. 임원(이사 및 감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6. 제1호가목의 경우 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자”로 본다), 제1호나목의 경우 해당 외국 법인이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7.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자와 이용자 간,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8. 그 밖에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 ③ 금융위원회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인가를 받은 자는 인가를 받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로 본다.

⑤ 제2항의 인가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인가의 신청 및 심사)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인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3개월(제7조에 따른 예비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가신청서에 흠풀이 있는 때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 및 제5항 후단의 심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가신청서 흠풀의 보완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불일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인가를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인가를 하거나 제5항에 따라 그 인가의 조건을 취소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인가의 내용
2.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인가의 조건(조건을 붙인 경우에 한한다)
3.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인가의 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한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신청서 또는 조건의 취소·변경 신청서의 기재사항·첨부서류 등 인가신청 또는 조건의 취소·변경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심사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예비인가) ① 제5조에 따른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인가(이하 이 조에서 “본인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제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자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인가신청에 관하여 흠결이 있는 때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심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예비인가신청과 관련된 흠결의 보완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예비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받은 자가 본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예비인가의 조건을 이행하였는지 여부와 제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본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비인가의 신청서 및 그 기재사항 · 첨부서류 등 예비인가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예비인가심사의 방법 · 절차, 그 밖에 예비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인가요건 유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자는 제5조에 따른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인가를 받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제5조제2항 각 호의 인가요건(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제6호

를 제외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합병 · 해산 · 폐업 등의 인가)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다른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자 또는 가상자산사업자와의 합병

2.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의 폐지

3.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와 양수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0조(인가의 취소) ① 금융위원회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2. 제8조에 따른 인가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제6조제4항에 따른 조건(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제41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영업의 폐지 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경우

6.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를 받은 업

무를 6개월 이상 중단한 경우

7.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8. 그 밖에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을 영위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자가 발행하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이외의 가상자산에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가상자산)”, “화폐연동형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가상자산)”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 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가상자산) 발행업자”,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가상자산) 발행업자”, “화폐연동형 디지털자산(가상자산) 발행업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특례) 이 법에 따라 발행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장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제13조(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신고서의 작성 및 공개) ①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을 발행하려는 자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을 발행하기 전에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신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행인에 관한 정보
2.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 목적, 용도, 기능 및 기술에 관한 정보
3.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즈거 통화에 관한 정보
4.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총 발행한도, 유통량 계획에 관한 정보
5.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기반이 되는 분산원장을 포함한 이전 등 거래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 및 그 보안에 관한 정보
6. 준비자산의 구성 및 보관 방법에 관한 정보
7.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상환 방법 및 이용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
8.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보유에 따른 이용자의 위험에 관한 정보
9.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준비자산 운용 방식 및 운용 수익에 관한 정보

10.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정보

③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 당시 발행인의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는 그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검토하고 이에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④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그 첨부서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발행신고”라 한다)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제출되어 수리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의 효력의 발생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에서 그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④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을 발행하려는 자가 발행신고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신고서에 기재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일 전일까지 철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거래의 제한) 제14조에 따른 발행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이 있는 경우에 그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인과 그 대리인은 그 청약의 승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정정신고서 등) ① 금융위원회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하여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하거나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신고서에 기재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일 전일까지 그 이유를 제시하고 그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신고서의 기재내용

을 정정한 신고서(이하 “정정신고서”라 한다)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그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신고서는 그 요구를 한 날부터 수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그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신고서에 기재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일 전일까지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을 취득하고자 하는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3항에 따라 정정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정정신고서가 수리된 날에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신고서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을 발행하려는자가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신고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⑥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수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은 금융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정정 신고 등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설명서의 작성 · 공시) ①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을 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설명서를 발행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②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설명서에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그 기재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업경영 등 비밀유지와 이용자(이용하는 자 포함) 보호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기재를 생략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신고서 및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설명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취득자

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이사가 없는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의 설립 전에 신고된 경우에는 그 발기인을 말한다)

2.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3. 그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 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그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 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제19조(손해배상액) ① 제18조에 따라 배상할 금액은 청구권자가 해당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추정한다.

1. 제18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의 변론이 종결될 때의 그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추정처분가격을 말한다)

2. 제1호의 변론종결 전에 그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을 처분한 경우  
에는 그 처분가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에 따라 배상책임을 질 자는 청구권  
자가 입은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  
로써 발생한 것이 아님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배상청구권의 소멸) 제18조에 따른 배상의 책임은 그 청구권자  
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해당 가치안정형 디지털  
자산에 관하여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한다.

제21조(신고서와 보고서의 공시)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  
년간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업경영 등 비밀유지와 이용자(이용하려는  
자 포함) 보호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비치 및 공시할 수 있다.

1.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신고서 및 정정신고서
2.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설명서

제22조(분산원장의 관리)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을 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분산원장을 기반으로 가치안  
정형 디지털자산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23조(발행 준거 통화의 액면에 의한 발행)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을 발행하려는 자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을 발행 준거 통화에 의한 액면을 표시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제24조(발행사실의 통보)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을 발행한 발행인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을 발행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발행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 내용 및 통보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장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상환 등

제25조(발행인의 상환의무) ①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이용자는 발행인에게 보유하고 있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을 액면에 따른 발행준거 통화로 상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환청구를 받은 발행인은 상환청구를 한 이용자에게 상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상환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준비자산 등의 확보) ① 발행인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총

발행 금액 이상의 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

② 준비자산은 발행 준거 통화로 표시되는 다음 각 호의 자산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1. 한국은행이 발행한 은행권과 주화

2. 취득 당시 만기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 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만기가 도래하는 집합투자상품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외국의 법령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그 밖에 손실 발생 가능성이 낮은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③ 준비자산의 확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준비자산의 별도관리 등) ① 발행인은 준비자산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이하 “준비자산 관리기관”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이하 “별도관리”라 한다) 하여야 한다.

1. 신탁

2. 예치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예탁 또는 보관

- ② 준비자산 관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준비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 ③ 발행인은 별도관리하는 준비자산이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상환을 위한 준비자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 ④ 누구든지 발행인이 별도관리하는 준비자산 또는 그에 관한 권리 를 상계 또는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 ⑤ 발행인은 이용자의 상환에 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긴급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별도관리하는 준비자산 또는 그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별도관리하여야 하는 준비자산의 산정방법, 별도관리의 기준 및 방법, 준비자산 관리 상황 점검 방식, 그 밖에 준비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운영실패 시 처리 및 조치권한) ① 준비자산 관리기관은 발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발행업무의 운영에 실패한 경우에는 별도관리하는 준비자산으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우선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의 준비자산 관리기관에 대한 상환청구 방법 및 준비자산 관리기관의 상환 방법 등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인가가 제6조제5항에 따라 취소된

경우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또는 제295조에 따라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경우

5.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이 발행되는 분산원장과 이에 수반되는 자동 조건 이행 장치의 장애, 전산사고 또는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발행 및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6.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이 발행되는 분산원장과 이에 수반되는 자동 조건 이행 장치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요소에 장애가 발생하여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발행 및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운영실패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발행인 등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준비자산 관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준비자산 관리기관은 제1항의 운영실패 사유 발생 시 별도관리하는 준비자산을 발행인에게 우선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④ 준비자산에 관한 청구권을 가지는 이용자, 그 청구권의 양수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발행인이 준비자산으로 별도 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그 청구권에 관한 금액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⑤ 준비자산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준비자산으로 이용자에게 상환한 경우 상환금액에 관하여 이용자가 발행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과 발행인이 준비자산 관리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준비자산 반환청구권은 소멸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에 대하여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9조(예금보험공사의 상환자금 지원) ① 단기간에 다수의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이용자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환청구를 하는 등의 사정으로 발행인에게 일시적 상환자금 부족현상이 발생하여 발행인이 제25조제2항의 기간 내에 이용자의 상환청구에 응하기 어려운 경우,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는 발행인의 신청에 따라 발행인이 준비자산 관리기관을 통해 별도 관리하고 있는 준비자산의 금액 범위 내에서 발행인에게 상환자금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예금보험공사는 제1항의 상환자금 지원을 하기 전에 상환자금 지원 사실과 지원금액을 상환자금 지원 대상 발행인의 준비자산을

별도관리하고 있는 준비자산 관리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준비자산 관리기관은 별도관리하고 있는 준비자산 중 예금보험공사의 상환자금 지원금액에 상당하는 준비자산을 별도관리 준비자산에서 분리하여 예금보험공사용 준비자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금보험공사용 준비자산에 대해서도 제27조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④ 준비자산 관리기관은 예금보험공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용 준비자산으로 제1항에 따른 상환자금 지원금을 예금보험공사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게 상환자금 지원금을 지급하기 전에 제1항에 따라 상환자금을 지원받은 발행인이 상환자금 지원금을 예금보험공사에게 반환한 경우, 준비자산 관리기관은 반환금액에 상당하는 예금보험공사용 준비자산을 제27조제1항에 따른 별도관리 준비자산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⑥ 발행인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총 발행 금액의 1,000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행인은 납부한 자금은 「예금자보호법」 제24조제2항제6호의 기타의 수입금으로 본다.

⑦ 제1항에 따른 상환자금 지원 및 제4항에 따른 상환자금 지원금의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과 제6항에 따른 출연금의 납부 시기와 납부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상환자금 지원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에 대한 우선상환 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5장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 등의 의무

제30조(건전성 유지의무 등) ① 발행인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을 충실하게 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발행인은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유동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발행인이 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거나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유동성이 높은 자산의 확보 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이자 지급 금지) 발행인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이용자에게

이자(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보유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금전적 이익을 말한다)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준비자산의 공시 및 보고 의무) ① 발행인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준비자산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그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이후에 처음으로 도래하는 영업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② 발행인은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한 준비자산에 관한 보고서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준비자산에 관한 보고서의 작성·제출 및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현황 보고 및 공시 의무) ① 발행인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총 발행량 및 총 유통량, 준비자산의 총 금액 및 구성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홈페이지 게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발행인은 매 반기 말일은 기준으로 제1항의 공개 내용을 다음 달 말일까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격 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금융위원회장이 고시하는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거래내역의 확인) ① 발행인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이용자(이용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가 요청할 경우 이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분산원장상의 이용자의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발행인은 이용자가 제1항의 거래내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거래내역에 관한 서면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거래내역의 종류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안전성 확보의무) ① 발행인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이전 등 거래(이하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거래”라고 한다)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 발행인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인력, 시설 및 장비, 인증방법 및 분산원장의 안정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6조(정보의 누설금지 등) ① 발행인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 및 관리 내용에 대한 정보(이하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정보”라 한다)를 업무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누설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정보를 취득한 자(그로부터 누설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정보를 다시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정보가 제1항을 위반하여 누설된 것임을 알게 된 경우 그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장 침해행위의 금지 등

제37조(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접근권한을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 및 관리에 이용되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접근하거나 접근권한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넘어 관리시스템에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파괴·은닉 또는 유출하는 행위
2. 관리시스템상의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관리시스템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또는 메일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하는 행위
3. 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일시에 대량의 신호, 고출력 전자기파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

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시스템에 오류 또는 장애를 발생

하게 하는 행위

4. 기타 관리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행위

제38조(침해사고의 통지 등) ① 발행인은 제37조 각 호의 침해행위로 인하여 관리시스템이 교란·마비되는 등의 사고(이하 “침해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

- ② 발행인은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침해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9조(침해사고의 대응) ① 금융위원회는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2. 침해사고의 예보·경보
  3.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4. 그 밖에 침해사고 대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절차·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장 감독 및 처분 등

제40조(감독 및 검사) ① 금융위원회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적절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자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검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자에게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이용자의 보호 및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적절히 준수하는지 파악하기 위한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
2. 준비자산의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거래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4. 영업방법에 관한 사항
5. 해산결의, 파산선고 등 영업중단 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6. 기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 및 가치안정형 디지털 자산의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금융위원회는 검사의 방법·절차,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그 밖의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41조(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경고
4. 주의
5. 수사기관에의 통보 또는 고발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금융위원회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자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위반행위에 관련된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또는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2.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또는 정직요구
3. 임직원에 대한 주의, 경고 또는 문책요구
4.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42조(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거래지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시장 운영자”라고 한다)에게 이 법을 위반한 발행인이 발행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에 대하여 매매, 교환 또는 그 중개·알선·대행(이하 “거래지원”이라고 한다)의 종료 또는 임시 중단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안정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통화 가치에 준거하여 발행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에 대하여 제1항에 관한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한 가상자산시장 운영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하여는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43조(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발행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

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하는 자료는 해당 발행인의 업무 부담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제44조(역외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5조(외국 발행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에 대한 특례) ① 외국 법령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인가 내지 등록을 하고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을 발행하는 사업자는 해당국가에서 발행된 외국통화표시 디지털자산(이를 “외국 발행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② 등록된 외국 발행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인은 외국 발행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이용자가 발행 준거 통화로 상환하여 줄 것을 청구할 경우 10일 이내에 상환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③ 등록된 외국 발행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을 거래지원하는 가상자산시장 운영자 등의 사업자는 자신이 보관 중인 외국 발행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보관 수량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시점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산정된 가치에 상응하는 금액을 이용자에 대한 보호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외국 발행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인이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보호기금의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법 및 활용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가상자산시장 운영자의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등 거래지원)

- ① 가상자산시장 운영자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을 거래지원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거래지원 적격성 평가를 하여야 한다.
- ②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이하 “준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이라고 한다)에 대해서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 가상자산시장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거래지원 적격성 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및 준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이하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등”이라고 한다)의 거래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가상자산시장 운영자는 거래지원을 하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기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거래지원 적격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참고하여 거래지원 계속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⑤ 가상자산시장 운영자는 거래지원을 하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가상자산시장 운영자가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등의 발행인에 의하여 충분한 공시가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행인,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등의 가치안정 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2.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등에 관한 주요 정보를 설명하는 자료의 원문 또는 자료의 원문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
  3.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⑥ 제5항에 따른 공시를 하는 가상자산시장 운영자는 공시 내용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⑦ 가상자산시장 운영자는 거래지원중인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등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공시하여야 한다.
- ⑧ 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장 별칙 등

- 제47조(별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정보를 업무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누설한 자

2.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한 자
3. 제37조제1호를 위반하여 관리시스템에 접근하거나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파괴·은닉 또는 유출한 자
4. 제37조제2호를 위반하여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또는 메일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한 자
5. 제37조제3호를 위반하여 일시에 대량의 신호, 고출력 전자기파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 및 관리 시스템에 오류 또는 장애를 발생시킨 자
6. 제37조제4호를 위반하여 관리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한 자

② 관리시스템의 해킹 등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을 유통하거나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를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을 영위한 자
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자
3. 제15조를 위반하여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신고의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취득 또는 매수의

## 청약의 승낙을 한 자

- ④ 제11조를 위반하여 명칭 또는 문자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⑤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⑥ 제1항(제5항에 따라 미수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포함한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 제4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3조를 위반하여 발행 즈거 통화에 의한 액면을 표시하여 발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비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4.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비자산을 별도관리하지 아니한 자
5.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별도관리하는 준비자산 또는 준비자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자

6. 제31조를 위반하여 이자를 제공한 자

7.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비자산에 관한 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 또는 공시하거나 준비자산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 또는 공시하지 아니한 자

8. 제34조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거래내역 확인 요청을 거부하거나 거래내역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자

9.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통지하지 아니한 자

10. 제40조제2항에 따른 검사·조사·자료제출·출석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1.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 발행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이용자의 상환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외국 발행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인

12.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등에 대한 거래지원 적격성 평가를 하지 아니한 가상자산시장 운영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